

대출계약 철회 신청서

주식회사 조이크레디트대부금융 귀중

본인은 「금융소비자보호법」 제46조(청약의 철회)에 의거 아래의 대출계약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대출 계약 철회를 신청합니다.

- 아 래 -

1. 신청인 인적사항

성명		생년월일	
주소			
연락처			

2. 대상 대출상품 현황

상 품 명		생 년 월 일	
계 약 자 명		대 출 금 액	
계 알 일 자		만 기 일 자	

□ 대출계약 철회 기간은 대출실행일로부터 14일(실행일 미포함) 이내로, 대출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 등을 전액 상환해야 철회의 효력이 발생하며, 대출계약 철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.

※ 부대비용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7조 제5항

- 해당 대출과 관련하여 회사에서 지급한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
- (근)저당권설정계약서에 따라 회사가 부담하거나 지급한 비용
- 그 밖에 상기 비용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

☐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의 대출계약을 철회한 고객은 신규대출·만기연장 거절, 대출한도 축소, 금리우대 제한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본인은 대출계약 철회 신청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습니다.

신청일: 년 월 일

신청인: (서명/인)